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09-10번지 일원
-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0~29층 7개동 총 5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 라. 주택 형 : 84㎡A, 84㎡B

2) 기관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9974A	84.9943B	합계	
약식표기		84A	84B		
공급 세대수		366	141	507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일반 (기관추천)	장애인	11(55)	4(20)	15(75)
		국가유공자 등	5(25)	2(10)	7(35)
		장기복무 제대 군인	5(25)	2(10)	7(3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5(25)	2(10)	7(35)
		중소기업 근로자	10(50)	4(20)	14(70)
	소계	36(180)	14(70)	50(250)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II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5.06.27.(금)		※ 홈페이지(https://www.jj-raon.com)
건본주택 개관	2025.07.04.(금)		※ 건본주택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1-1번지 홈페이지 :(https://www.jj-raon.com)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5.07.07.(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5.07.16.(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5.07.28.(월) ~ 2025.07.30.(수) 10:00~17:00		※ 장소 : 건본주택(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1-1번지)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및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 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 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도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하여야 하며, 예비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예외)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당첨이 제한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건본주택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1-1번지
- 분양문의 : 1660-0507